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일시 : 2013년 9월 4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 인권중심 사람



사회 | 장서연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 | 한가람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크리스 (그루터기)
여기동 (동성애자인권연대)
김순남 (여성학자)

주최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한기람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목차

1. 들어가며
2. 동성결합과 <당연한 결혼식>의 시간성
 - (1) 동성결합의 실천들
 - (2) 너무 이른 기회, 혹은 너무 뒤늦은 기획
3. 결혼식이라는 의례와 동성결합의 서사
 - (1) 제도/수행으로서의 결혼식
 - (2) 공개적인 결혼식, 대중적인 결혼식
 - (3) 동성결합의 서사들
4. 마치며

1. 들어가며

오는 9월 7일,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당연한 결혼식>)이 열린다. 이전에도 동성 커플이 결혼식 또는 언약식 형태의 의례를 가져 왔다는 것이 커뮤니티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도 이러한 의식을 열고 있는 커플들의 소식이 들려온다. 이러한 의례들을 포함에서 이미 동성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결합¹을 실천하고 있는 커플들이 상당수 있고, 이러한 실천들은 종종 언론이나 연구, 행사 등을 통해 알려져 왔으며 또 커뮤니티 내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는 동성결합 제도화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와는 별개로, ‘가족 실천’ 또는 ‘가족하기’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가족 실천은 이미 (반)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실천들은 동성결합에 대한 질문을 이미 던져왔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가족의 구성과 형태, 그리고 그 실천을 가족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서, 다양한 생애를 구성할 권리로로서의 가족구성권과 다양한 가족 실천들을 지지해 왔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 제도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를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언장 쓰기’, ‘의료결정권 워크숍’ 등을 통해 자력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해 왔다.

여기서 우리 모임의 관점은 동성결합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가족 실천들, 그리고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양상들을 ‘제도화한 가족’의 모습과 함께 살펴보되, 이러한 가족 제도를 자명하거나 자연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화하는 동시에 법으로도 치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제도화’에 대해서 역시 가족제도에 대한 보수적 담론과는 다르게 가족규범에 대해 질문하는 비판적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계속될 포함과 배제에 대한 긴장을 놓치지 않고자 해 왔다.

동성결합제도의 의미는 단일하지는 않다. 각자마다 다른 실천과 관심사와 욕구가 개입되

1 이 글에서 ‘동성결합’은 동성파트너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현실적인 모습으로서는 동거 등의 관계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법제도 차원에서 인지, 인정되는 방식으로서 동성혼이나 혼인은 아니더라도 생활동반자관계 등 제도화된 파트너십 등의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결합’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적절한 용어로 보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결혼’을 ‘결합’의 일종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사실 ‘결합’이라는 말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이라는 의미(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문제적이다. [“혼인식 주례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와 같은 말은 실제의 커플 관계들이 갖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들을 상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정말 실제 수많은 커플 관계가 과연 운명적, 경제적 공동체이며, 혈연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나비아 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야기」,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08, 54쪽]

다만, 여기서 ‘관계 맺기’, 보다 정확하게는 ‘관계 묶기’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는 ‘동거’와는 다소 다른 차원의 ‘관계 묶기’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관계 묶기’가 단순히 법과 제도를 통한 관계 묶기뿐만 아니라 가족법을 통한 것이 아닌 언약(약속), 협약 등을 통한 관계 묶기를 포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지난 7월, 워크숍 “가족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에서 이러한 ‘실천으로서의 가족’, ‘가족하기’ 등의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 모임은 대안적 가족 논의의 출발점으로 가족을 규범적인 형태의 고정된 단위로 보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실천하는 개인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 왔던 것을 밝히면서, ‘가족하기’의 유동성과 개방성에 주목했다. 이에 관하여는 이번 워크숍 자료집에 함께 수록한 김원정, 「가족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참조

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누구에게는 공적 인정이 중요한 것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이 의미를 가질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나 의료결정권 등의 문제가 핵심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해소를 어렵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전망과 관계를 다지는 것이 제도에 진입하는 이유일 것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딱히 관심은 없으나 선택지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거리를 두고 싶거나 두어야 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동성결합제도의 형태와 무관하게 실천으로서의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동성결합가족을 수행하는지, 그 실천의 모습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임은 ‘제도화냐 제도밖이냐’, ‘결혼이냐 파트너십이냐’ 논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각각을 제도화와 관련한 흐름에서 선택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서 그 선택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고보다는, 동성결합이 제도화되든 제도 밖에 있도록 하든, 제도화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든 **이러한 과정이 어떤 가족 실천을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전 생애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또 그것을 통해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뜻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우리 모임은 가족에 관한 내용들을 단지 ‘누구와 어떠한 가족을 구성하고 그것이 어떠한 특권을 누리는지 또는 그것이 어떤 차별을 경험하는지’로만 한정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애(주기)’**의 문제로 바라보기도 해 왔다. 가족의 구성 등은 사람의 생애주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애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은 언제나 단일한 가족(형태)의 상황에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혈연, 혼인, 공동체 등의 관계 맺음과 관계 단절 속에서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거나 해소하기 때문이다.

이 발제문은 위에서 제시한 ‘가족 실천’, ‘다양한 생애(를 구성할 권리)’, ‘가족 차별’, ‘가족 제도’,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제도화’에 관한 관점을 바탕으로 동성결합의 실천의 의미와 양상을 이번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과 함께 살펴보려는 글이다. 동성결합의 실천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은 어쩌면 유명한, 셀레브러티의 결혼식 이벤트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이 열린다는 사실은 하나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양가 또는 커플이 주최하는 하나의 개인간의 결합에 관한 의식으로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야외장소에서,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회적 방식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성결합 실천에 관하여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이성간의 결혼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식은 온당한 것인가? 이성애를 전제로 한 젠더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족제도에서 동성결합은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있고 피할 수 있는가? 이성간 결합의 실천과 동성간 결합의 실천은 어떠한 다른 서사들을 가지고 다른 욕망들이 투영되는 것인가? 동성결합 실천의 대안성은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가?”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이 발제문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결혼식이 놓인 맥락과 시간성 역시 중요하게 바라보며 현재의 시점에 충실하게 동성결합의 실천과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을 살펴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족 실천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하게 될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경험, 생각,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껴 보면서, 이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서 준비되었다. 또한 이 발제문은 오는 9월 7일 결혼식을 어떻게든 주목하고 있는 동성애자/커뮤니티의 그러한 또 다른 실천들을 의미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2. 동성결합과 <당연한 결혼식>의 시간성

(1) 동성결합의 실천들

우리 모임은 이미 지난 7월 워크숍에서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은 ‘갑툭튀’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이 결혼식이 기존의 규범적 가족에 대해 도전해 온 역사 속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는 이 결혼식이 성소수자의 가족 실천, 더 좁게는 **동성결합 실천의 연장선상, 그 시간성 위**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소수자의 가족 실천과 생애 구성

성소수자의 가족 실천은 커플의 동성결합으로만 수렴되지는 않는다. 성소수자로 구성된, 또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가족 실천** 등 다양한 관계적 실천이 있어왔다. 우리 모임은 2008년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을 펴내며 게이 공동체 가족에 대한 사례를 연구한 바 있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06년에 발간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에서 역시 커플간의 결합 외에도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가족 실천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이성/법률혼이라는 전형적인 가족구성의 결합관계에서 벗어난 성소수자들은 **커플중심을 넘어** 다양한 친밀성과 돌봄의 관계를 모색하게 될 수밖에 없고, 현재에도 뜻이 맞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비혼공동체**나 ‘우리 (나이 들면) 함께 집 지어/빌려 살자’와 같은 모습으로 관계적 실천을 하고 있거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족 실천들은 ‘비혼’이나 ‘나이’ 등의 코드를 통해서, 가족구성권이 다양한 생애를 구성할 권리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성혼은 이제까지 생애구성에 있어서 전형적이고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을 해 왔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인정을 부여하는 핵심적 기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것의 바깥에 놓인 삶은 가시화된 영역에서 추방되어 있었고, 이러

한 생애모델은 접할 수 없거나, 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거나, 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애모델로서 인식되지 않는 것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은 이 추방되고 비가시화된 영역에서 공동체적 또는 커플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실천, 또는 독립과 돌봄과 친밀성의 다양한 관계적 실천을 이어왔고, 이것은 성소수자가 놓인 조건이 되어오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천들은 생애구성을 이성혼 중심의 전형적인 것을 넘어서 **다양한 생애구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동성결합 실천의 사례들

이처럼 동성결합의 실천 역시 자신의 생애구성에 관한 **권리를 얻기 위한 움직임** 속에 놓여 있고, 이러한 모습은 최근 수년간 조금씩 드러나 왔다. 이미 우리 모임은 2008년 위 기초자료집에서 동성결합 커플들(레즈비언, 게이 각 한 커플)에 대해 트랜스젠더, 장애인을 포함한 이성결합 커플들과 함께 사례연구를 한 바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언니네트워킹과 공동으로 사진전 <정상가족 관람불가전>을 비롯해서 열 개의 가족/공동체와의 인터뷰와 사진기록을 담은 스토리북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을 통해 세 동성결합 커플들의(레즈비언 두 커플, 게이 한 커플) 동성결합 실천의 사례들을 상세히 전하기도 하였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위 자료집은 사례발표대회와 ‘예쁜가족’대회,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동성결합을 실천하는 수 개의 사례들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단체들은 대중행사나 사례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동성결합의 실천들을 이미 수년 전부터 드러내고 이야기해 왔다.

언론을 통해서도 동성결합의 실천들은 드러나 왔다. 2002년 ‘국내 처음 공개 결혼식’이라고 『여성동아』에 보도된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³ 2004년 마찬가지로 ‘국내 첫 동성간의 공개 결혼식’이라고 다수 언론에 보도된 게이 커플의 결혼식(이 커플의 경우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를 거부당한 바 있다),⁴ 2010년 MBC 시사보도프로그램 “후 플러스”에 보도된 동성커플들⁵ 등 많은 신문, 잡지, TV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여줘 왔다.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러한 실천들은 낯설지 않다. 2007년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2.4%가 애인/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⁶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3 「국내 처음 공개 결혼식 올린 레즈비언 커플 한미진·이주경」, 『여성동아』 468호(2002. 12. 1.)

4 『한겨레』 2004. 3. 8.자 ; 『경향신문』 2004. 3. 8.자 등

5 MBC “후 플러스” 163회(2010. 7. 1.)

6 고유미 외,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기획단, 2007, 39쪽 참조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가 포함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동성커플간 동거의 경험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동거에 관한 내용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동거를 넘어 ‘안정적인 관계’로 오래 지속하는 것을 원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변에도 동성결합을 하고 있는 관계들도 종종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약식, 결혼식 등의 의례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이러한 의례에 참여하는 경험 역시도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렇게 점차 드러나는 동성결합의 모습들이 단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실천들이 이성결합의 실천과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지이다. 다양한 모습들이 실재하고 있지만 드러나고 공유되는 것은 그러한 경험들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것들은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동성결합 실천의 역사성 혹은 시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흐름’이 감지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그러한 감지나 확인 역시도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이 모두 다 사회화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일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이 꼭 사회화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관련한 숫자도, 서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적으로, 또 이성애자와 만날 때 얼마나 동성결합의 실천이 공유되고 있는지와도 연관된다. 물론 이러한 경험의 공유의 문제는 동성애자가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로서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가의 문제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사성의 맥락, 그리고 ‘순간’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결혼식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계기일 수 있다. 많은 실천들이 이미 언론이나 연구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하지만, 이러한 실천들은 “찾아내야” 하는 대상에 가깝다. 평범한(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루어나가는 삶의 서사, 또는 생애 중에서 하나의 모습으로서 나타내지도 않고 동성결합의 실천에 관해서 쏟아지는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대중적으로 화제가 되는 결혼식을 통해 동성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서사를 많은 인터뷰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 이러한 계기를 통해 동성결합 관계에 있는 동성애자가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은 동성결합 실천의 시간성 위에 놓여 있지만, 어떠한 분절점 또는 어떠한 독특한 하나의 ‘순간’ 또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동성결합의 실천이 대중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동성애자의 존재가 대중적으로 드러났던 순간과 유사한 점을 공유하기도 한다. 동성애자의 대중적 드러남이 홍석천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홍석천의 커밍아웃 역시 다양한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성소수자 운동이 이어지는 시간성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 또는 ‘사건’이었다. 이 때 홍석천에 대한 대중적 비난, 또 홍석천이라는 개인의 모습이나 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사가 동성애자를 과잉대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동성애자들의 우려 역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동성결합 커밍아웃’에서 역시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이 보여주는 ‘순간’ 또는 ‘사건’으로서의 성격은 다양한 동성결합 실천의 서사가 사회적으로, 또 커뮤니티 내에 공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2002년의 기사제목이나 2004년의 기사제목처럼, 또 다시 “국내 최초 공개 동성결혼식”(물론 이번 결혼식과 2002년, 2004년의 결혼식은 공개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강화된다. 이러한 ‘처음’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시간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너무 이르게 찾아온 것, 또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라는 의미 말이다.

(2) 너무 이른 기회, 혹은 너무 뒤늦은 기회

지난 1차 워크숍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소수자 운동은 2004년부터 동성결합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다양한 동성결합의 실천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갑작스레, 너무 빨리 온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거리감

이것은 동성결합의 수행과는 별개로, 동성결합 제도화의 과제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에 따른 탓일 가능성이 크다. 운동이나 개인 차원에서 분명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이라는 구호는 필요성이 있었고 제기되어 왔으나, 사회 공론의 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낮은 풍경이다.

물론 2010년대에 들어 급격히 동성결혼을 제도화한 나라가 늘고 있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도 소규모였던 주들을 넘어 인구가 상당한 뉴욕주를 비롯해서 여러 주들이 동성결혼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방어)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등의 국제적인 흐름은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소개가 되어 왔고 큰 이슈가 되어 왔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 모두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한국에서는 동성결합 또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아직 이른 것은 아닌지 하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이에 관한 관심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관점 모두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앞의 이유가 되는 점은, 먼 나라(주로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운동의 역사와 제도와의 접점이 많을 것이라 여겨지는) 이야기로서 한국사회에서도 언젠가는 동성결합이 제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나라 성소수자 관련 제도나 환경에 대해서 상상되거나 느껴지는 거리감만큼이나 아주 먼 미래라는 인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서구의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상정되는 ‘동성애 비범죄화-차별로부터의 보호-동성결합 등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가족구성권의 제도화'(Kees Waaldijk)라는 '비동시적인 것'이, 2013년 한국사회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요구(비범죄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차별방지), 동성결혼식(동성결합) 등을 통해 동시에 커다란 과제로 다루어지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부터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사정(물론 '군대 특수성' 담론의 영향 역시 크지만)을 본다면 이것은 더욱 멀어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중요하지만 현안이 아닌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운동/커뮤니티에서도 동성결합 제도화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되 현안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져 왔고,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이라는 입법과제나 간헐적 활동 외에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아 왔다. 물론 이는 **운동의 입장**에서 **결혼제도와 관련한 거리두기**,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성주의의 관점**, **퀴어이론의 관점** 등에서 이루어져 오면서,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등의 **전망이나 기획, 전략** 등을 **공론화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당사자들로부터 비롯되는 점도 있는 것인데, 동성결합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수의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성결합 제도화를 요구하지는 않아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략 1) 동성결합 커플이 많지 않음, 2) 동성결합 커플이 많다 하더라도 제도화에서 비껴서 있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문제로 인식되지 않거나 제도화 자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짐, 3) 실질적인 불이익/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싸우기에는 자기 자신/운동/한국사회의 역량과 상황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판단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사실 만약 아주 많은 동성결합 커플들이 (최근 미국 미네소타 주 동성결혼 시행 첫날, 몰려드는 커플들의 사진을 보라) 실제로 욕구를 가지거나 절박함이 가시화되어 왔다면, 공개적인 동성결혼식의 생경함이나 동성결합 제도화를 이야기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인상은 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한편으로는 **'동성결합이 제도화된다고 해서 누가 등록을 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와 관련한 아주 기초적인 제도적인 마련도 되어 있지 않는데 **공적 관계에서 동성커플임을 공인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성애자에게 시급한 권리”이자 활용가능성을 고려하게 하는 이슈

그렇지만 반대로 동성결합과 관련한 이슈의 대중적인 제기가 너무 늦은 기획이라는 시각 역시도 존재한다. 다양한 외국 사례가 국내에 소개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커뮤니티나 운동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나 문제제기가 없어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때때로 관심을 가지고 동성커플의 이야기를 다루어 왔는데 이것 역시 1회적인 관심 환기 정도에 그칠 뿐이고 여기에 대한 운동/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개입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던 점 역시 있다. 또한 “동성애자에게 시급한 권리=혼인할 권리”⁷라는 시각에서는 어쩌면 동성결합의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핵심적인 현안으로 등장해야 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또한 균형법 제92조의6 폐지의 경우 동성애자 중 상당수 역시도 남성(동성애자) 군인과만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적용되는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위하효과도 적어 상징적인 의미가 커 보이고(위 조항은 군대 내 호모포비아의 근거규정으로서 실질적인 의미 역시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차별금지법의 경우 위기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를 가늠하기 힘든 제도적 선택이자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아예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도적 이슈보다는 **관계보장의 선택지로서의 동성결합의 제도화가 훨씬 직접적이고 활용가능성을 고민하게 되는 주제**로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러움의 감각

이러한 어떠한 한 쪽의 시간적 의미가 모든 양상을 담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성소수자 운동/커뮤니티에서는 2004년부터 지속적인 일정한 운동과 흐름들을 크게 대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어 왔고, 그 사이에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 ‘동거’ 또는 ‘결혼’ 등의 서사는 쌓여 왔다. 한편, 동성결합 이슈에 관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현실에 있어서 그 욕구가 조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어쩌면 이러한 이르다거나 뒤늦었다거나 하는 감각보다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성은 ‘갑작스러움’의 감각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왜 지금”, “대중적/공개적”, “결혼식”인가?라는 질문과도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실마리를 이어나가 보려고 한다.

3. 결혼식이라는 의례와 동성결합의 서사

(1) 제도/수행으로서의 결혼식

결혼식이라는 제도

7 이준일,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외국법의 동향」, 『2012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2, 82쪽

결혼식이라는 의례는 하나의 제도로 작동한다. 법적 제도는 아닐지라도 사회적인 제도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⁸ 이것을 '제도'라고 호명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사회적인 기대, 요구, 체계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견례, 예물준비, 신혼집과 신혼살림 마련과 같이 결혼식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부터 주례, 사회자, 축가, 입장과 행진, 축의금, 청첩장, 음식, 턱시도와 웨딩 드레스, 한복, 피로연, 신혼여행, 혼인신고 등등 결혼식은 일련의 요소들이 체계를 이룬 집합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일부 조금씩은 변형하고 수정하되 큰 틀에서는 상당한 전형성 또는 규범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식의 수행은 동성결합 '제도화'라는 틀에서 보았을 때 이 '제도'의 틀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다. 동성결합이 제도화될 경우, 관계의 등록 전후로 이러한 의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더욱 자주 경험하게 될 것이기도 하다. 또 제도로서의 결혼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성결합의 실천으로서 이러한 '결혼식 제도'를 어떻게 변형하고 위반하고 그 규범성에 도전할 수 있는지는 동성결합의 법적 제도화에 따른 변화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제3자를 통한 관계의 공인

한편, 동성결합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 또는 언약식 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가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들 앞에서 서로의 관계를 공개하고 공인받음으로써, 일정한 관계의 구속력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제3자 앞에서 정식으로 수행하는 '관계 묶기'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2002년 여성동아에 기록된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 2004년 게이 커플의 결혼식 등은 바로 이러한 시도들의 일부이고, "정한수를 떠놓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부터 오는 9월 7일의 대중적 화제가 되는 결혼식까지 다양한 동성결합 실천의 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의례들이 등장한다.

“우리가 아무리 같이 벌고 같이 써도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결혼식을-인용자)하

8 박정희 시대에 관혼상제에 대한 제도적 규범으로 작동하던 “가정의례준칙”은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식 자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실질적 규범성은 매우 약화되었지만, 현행법에서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대통령령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정의례’라고 하면서도 복장과 식순까지 친절하게 대통령령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 기묘한 현실이지만, 이것은 어쩌면 ‘가정의례’가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편,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도서출판 해울, 2006, 22쪽

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¹⁰

친구들 앞에서 결혼식을 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인 위 인용문에서처럼 결혼식은 제3자 앞에서 ‘확실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확실성은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의례를 통해 부과되는 것이다.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사실 상대로부터 ‘너는 동성애자’라는 것을 이해/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듯, **관계의 커밍아웃으로서의 결혼식**은 ‘너희들은 이제 부부/커플이야’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행위이다. 이처럼 결혼식은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축하해 달라는 형식을 띄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관계의 공인을 받는 과정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공인 의례가 끝나면, 이 둘은 (법률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관계로서 인정을 받고, **11 관계의 유지와 해소에는 친족이나 서로의 친구 등의 왕래나 개입 등이 종종 정당화**되며, 이러한 관계의 유지와 해소는 (적어도 이성간의 경우에는) 복지, 세금, 가사사건 등을 통해 공적인 프로세스와 직접적으로 맞닿게 된다.

동성간 결혼식의 장면들

이러한 결혼식 역시도 동성결합 실천의 하나의 양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식의 모습은 기존의 이성간의 결혼식 장면과는 사뭇 다르다. 다음은 제한된 텍스트를 가지고만 추출해 본 양상이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동성간의 결혼식 장면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1) 친족 참여의 부재 또는 제한:

- 앞서 언급한 2002년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에는 ‘양가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의 할머니가 등장하고, 이들 셋은 한집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난다. 2004년 게이 커플의 결혼식에서도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치러졌다. 위에서 인용한 스토리북의 레즈비언 커플이나 또 다른 자료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식을 올렸다는 게이 커플 역시 가족들 없이 친구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이번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의 경우 ‘양가의 허락’은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양쪽 가족의 참여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결혼식에서도 상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결혼식 역시도 기존의 규범적 결혼식과는 일정한 거리두기가 존재한다.

10 몽, 「결혼과 다르지 않았던 결혼식」, 스토리북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언니네트워크/가족구성권연구모임, 2012, 63쪽

11 법률혼은 아니더라도 부부관계로서 일정한 제도적 보장이 따르는 사실혼과 관련하여, 법원이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결혼식을 했는가는 중요한 판단자료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 이러한 결혼식의 의미는 규범적 결혼이 개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간의 결합을 뜻한다는 점에서 위배되고, '둘만의 사랑, 둘만의 관계'라는 근대 로맨스의 전형(또는 판타지)을 오히려 보여주기도 한다.

2) 젠더규범에 대한 도전:

- 2002년의 결혼식에서는 '턱시도와 웨딩드레스가 아닌 정상 커플룩'의 복장으로 결혼식의 양 당사자가 참여한다. 동성결합 커플들의 결혼식에서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로 상징되는 복장의 문제는 새로운 고민을 낳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정장과 웨딩드레스'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은 이성간 결혼식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젠더규범을 뒤트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심지어 게이 커플이 '턱시도와 턱시도'로 등장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는 젠더규범의 혼란으로 다가가기도 하는데, 이는 "그러면 둘 중 누가 여자냐"는 뿌리 깊은 이성애중심적 사고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입맞춤, 손잡기 등 동성간에 사랑을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기존의 젠더규범과 배치되는 것도 사실이다.

-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웨딩사진을 미리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턱시도와 턱시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웨딩드레스와 웨딩드레스'의 모든 컨셉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러한 기존의 규범 비틀기는 대중적으로 도전적으로 읽히게 된다. 여기서 결국 화제가 된 것은 웨딩드레스의 등장인데, 이러한 '드랙'에 대한 게이커뮤니티 안팎의 비난은 젠더규범에 대한 도전이 쉽지 않은 있음을 보여준다.

- 이밖에도 '남-여'를 가리지 않는 또는 가를 수 없는 관계에서, 남성이 먼저 식장에 입장하고 신부의 아버지가 여성을 남성에게까지 인도하는 모습 등의 관습은 무용하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식장 입장에 있어서도 동성결합의 실천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놓을 수밖에 없다.

3) 다른 형식(들):

- 결혼식의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상징되는 예식장 등은 동성결합 커플의 경우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2002년의 결혼식도 '안국동의 한 카페', 2004년의 결혼식도 '종로의 한 카페', 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에서 인용한 게이 커플은 '집', 위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에서 인용한 레즈비언 커플은 '함께 운영하던 바'가 결혼식의 장소로 등장한다.

- 시간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 역시도 '주말 또는 공휴일 낮'이라는 전형성은 이들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 사회자의 경우에도 신랑의 친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나 은사 등을 모시는 방법의 주례(주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역시도)는 불가능하거나, 어색하거나, 부적절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혼식이라는 동성결합 실천의 한 모습이 완전히 전복적이거나 하지는 않다. 결혼식이라는 또 하나의 규범과 제도가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성간의 결혼식 역시 일정한 결혼식의 규칙들과 순서들을 따라가게 된다. 이는 결혼식을 수행하는 동성커플의 욕망만으로는 모든 것을 구성할 수 없고, 일정한 ‘결혼식’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하객(또는 관객)과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김조광수-김승환의 독특한 결혼식마저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가’와 같은 점들에 부딪히고, 공개적인 결혼식이라고 홍보하고 있음에도 초대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풍경 역시도 이러한 모습 중 하나이다. 한편, 결혼식에서 드레스를 입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 커플의 고민은 젠더규범성에 대한 도전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 ‘친족’과의 관계이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가족간의 결합으로서 의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당사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결혼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눈과 개입을 막기는 힘들다. (특히 친족들만 모여서 하는 결혼식이 아닌 이상) 친족이 올 수 있고 와야 하는 결혼식이라면, 직장동료든 학교친구든 그 누가 와도 무리가 없는 결혼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례는 누구인지, 하객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친족들을 안심시키게 하는 전형적인 젠더규범은 잘 지키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동성결합의 경우 이러한 친족의 개입은 한계가 있다. 친족의 개입이 가능하다면 ‘이 결혼 반달세’가 오히려 전형적인 반응이고, 이것은 동성결합이 제도화된다고 해서 쉽사리 해소될 만한 성질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식을 비롯한 동성결합의 실천들은, 동성결합 제도와 여부와 관계없이 이성결합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¹²

(2) 공개적인 결혼식, 대중적인 결혼식

결혼식의 욕망

이렇게 본다면 동성결합에 있어서 결혼식을 하려는 욕망은 혼인신고라는 국가와의 관계

12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시댁-처가의 구도/결혼=두 사람의 결합을 넘은 두 가족의 결합”이라는 것은 성별규범뿐만 아니라 이성애적 질서를 유지하고 강요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그래서 동성결합의 실천은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제대로 도전받지 않아왔던, 절대적이고 자연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이성애적 관계에 대한 **상대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동성결합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역시도 제기되는데, 저렇게 성별규범과 이성애적 질서를 강요함으로써 여성/성소수자 등에게 억압적인 가족제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속에서의 공인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공인을 법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제도로서 기능하는 결혼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공인의 내용 중 하나로서 서로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동반자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제3자 앞에서 서로의 약속(언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의 전제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욕망 13은 동성결합 제도화/가족구성권 보장의 흐름에서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결혼식의 욕망은 ‘턱시도/드레스를 입고 화장(이른바 “결혼식 화장”)을 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을 포함하여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욕망의 측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제도적인 변화 요구에 있어 ‘차별과 배제의 현실’만큼이나 이 ‘욕망’은 중요한 추동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역시 이러한 **‘욕망으로서의 결혼식’의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이 결혼식은 커플 혹은 관계로서의 욕망뿐만 아니라 김조광수 개인의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커 보이는데, 이것은 이 결혼식이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김조광수는 이 ‘당연한 결혼식’을 기획하게 된 이유 중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결혼식은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인 것이다.¹⁴

이러한 욕망은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이 가지고 있는 공개성과 공식성,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로서의 독특한 성격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김조광수가 언론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다. 김조광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점을

13 사례8 게이동거커플 - “저는 (동성결혼이 제도화되면 동성결혼을) 하고 싶어요. (중략)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 금전적인 것 한두 가지 따져서 결혼할 필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례4 한 명이 FTM인 동거커플 (“성별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동성결합이 제도화된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 치지만, 그렇게라도 인정을 받는다는 게 따뜻한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2008, 102-103쪽

14 “1981년 7월 29일, 세기의 결혼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황태자 찰스와 그의 연인 다이애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성과 마차,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바로 제가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동화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니! 그날 이후 저의 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과 똑 같은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꼭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는 결혼을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김조광수, 「어느 멋진 날, ‘당연한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문화연대 소식지 “문화빵” 24호(2013. 8.))

“첫 번째로는 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에 충실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욕망이 아니면 여러 가지 좌절 때문에 못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도 이 결혼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내가 가진 욕망을 실현하는 거니까요.” (규환/석, 「“IDO!” 평등한 결혼을 꿈꾸는 김조광수의 결혼 이야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소식지 38호(2013. 8.))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언론에서도 이를 반복해서 화제가 되는 기사로 보도해 왔다. 또한 이 결혼식은 셀레브리티의 ‘동성결혼식’이라는 것 자체도 센세이셔널한데(물론 김조광수의 셀레브리티로서의 성격은 동성애자라는 점과 동성결혼에 대한 언급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19세 연하남과의 결혼’이라는, 한국사회에서 보기에 상당한 나이차가 있는 커플이라는 점은 언론과 사회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커플로서의 커밍아웃

이는 또 동성결합 커플로서의 커밍아웃-김조광수와 결혼하는 19세 연하남이라는 사실을 노출하는 데-에 용기를 낸 파트너의 역할 역시도 크다. 이러한 커플의 커밍아웃은 홍석천의 커밍아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홍석천이 커밍아웃했던 2000년대 초반, 홍석천의 커밍아웃이 동성애자에 관한 존재 자체의 커밍아웃, ‘단독자로서의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이었다면, 김조광수-김승환의 커밍아웃은 초기부터 그의 파트너와의 결혼이 화제가 되면서 **‘사랑과 성애를 나누며 공동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으로서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는 드러냄이라는 것이다.

동성결합 실천을 드러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커플로서의 삶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커밍아웃을 동반한다. 이것은 동성애자 정체성의 커밍아웃보다 생애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과 이목을 끄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김조광수-김승환은 대중적 커밍아웃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동성결합에 대한 관심과 입장들

이처럼 동성결합의 실천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등장하면서, 이 결혼식은 ‘동성결합-제도화’ 코드 속에서 혼인신고나 헌법소원 등의 제도적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개인의 욕망에서 시작된 결혼식이지만, 이것은 그 욕망이 대중성과 공개성을 향한다는 점, 그리고 결혼식 자체가 결국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라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 ‘사회’, ‘문화’, ‘규범’ 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성결합의 실천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동성결합의 실천을 통해 동성결합(과 그 제도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것은 올해 많은 화제가 된 뉴질랜드와 프랑스의 동성결혼 제도화나 미국의 결혼보호(방어)법에 대한 위헌판결과 맞물려 더욱 확산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질문과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많은 언론들이 찬반 코너에서 ‘동성결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여론조사기관 등의 조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사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수행하고 사람들에게 입장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다. 그 묻는 행위와 대답을 하는 행위들은 사회적으로 논점과 입장을 형성하게 하기도 하는 효과를 낳는다.¹⁵

질문과 이야기가 모이는 자리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동성혼 제도화 찬반이라는 논점이 핵심적인 것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이 ‘평등’,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모토 등을 통해 이 논점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결혼식의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 결혼식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이 발제문 자체가 그러한 질문 던지기의 방법이기도 하는데,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질문들은 ‘동성결혼 제도화 찬반’을 묻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거리와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논점**으로서, 이러한 질문의 작동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

그래서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은 이러한 질문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이것은 결혼식의 주인공이나 준비에 참여한 사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 결혼식에 대한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결합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실천을 하고 있거나 기획하거나 꿈꾸거나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화제 또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 결혼식은 결혼식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동성결합 제도화의 문제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표면적인 효과는 동성결혼 찬반론에 그칠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다양한 욕망들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성소수자의 가족 실천의 모습들 드러내며, 다양한 서사들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서사’는 어떤 순간이나 사건을 넘어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동성결합 실천들 중 어떠한 서사들이 등장하느냐는 다시 중요한 질문으로 제기된다.

15 한국갤럽은 2013. 4. 18. “최근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다면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갤럽은 2011년에도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조사”도 한 바 있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지점도 발견된다. 문항이 약간 달라서 완전히 비교는 어렵지만 [2011년 조사문항 “동성연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2013년 조사문항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한 찬반은?” - 이처럼 문항이 짧아지는 것도 사회적으로 이에 관해서 어떠한 배경지식을 전제하는데, 이것 역시 흥미로운 점이다], 동성혼 인정에 대해서 2011년에는 “반대한다”가 66.9%, “찬성한다”가 16.8%, 모름/무응답이 16.3%로 나타나는데, 2013년에는 “반대”가 67%로 거의 변동이 없는 데 비해, “찬성”이 25%, 의견유보가 “8%”로 나타난다. 1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찬성한다는 응답이 50%가량 늘어나고 유보적 의견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또 주목할 만하다.

(3) 동성결합의 서사들

가족제도와 가족서사

가족제도는 일정한 형태 또는 구성의 가족을 이른바 정상가족으로서 가족제도의 중심을 상징한다. 이러한 제도는 그러한 형태 또는 구성을 바탕으로 일정한 서사를 전개하는데,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 아이들을 낳고 잘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또는 “어려서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살아오느라 일정한 결여를 경험한다”와 같은 서사와 그 모델링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처럼 가족제도/가족정책은 일정한 서사와 모델, 그리고 이것의 재현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짜이는데, 이러한 점에서 가족 실천의 서사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¹⁶ 앞서 한 ‘동성결합 실천의 공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암시됐듯, 동성결합의 실천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천들이 서사로 드러나는 것 역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동성결합의 서사와 '로맨틱'의 서사

이제까지 쌓아온 동성결합의 서사는, 그것이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커플들의 다양한 실천을 보여준다. 차별과 배제, 대안성과 적극성, 이들 사이의 사랑과 친밀성과 갈등들, 해소와 죽음 등의 위기, 일상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 동성결합 실천의 현실들을 엮어 왔다. 우리 모임에도 2008년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을 통해 동성결합을 비롯해서 성소수자 가족 실천의 대안성을 드러내면서도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2012년에는 언니네트워킹과의 공동작업으로서 <정상가족 관람불가전>이라는 사진전이나 스토리북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을 통해서 가족 실천의 삶 속에 들어가 사진을 통해 일상의 장면들을 잡아내고 당사자들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2006년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연중 프로그램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스피크 아웃”>을 통해 주로 동성애자가 가족 실천에 있어서 겪는 부당함, 불이익 등을 주로 다루었고,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를 통해 네 가족 실천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 가족들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진취성 등을 격려하고 고무’하기도 하였다.

16 그런데 이러한 서사는 ‘모델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처럼 실재를 완전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일정한 ‘공백’을 낳을 수밖에 없다. 모든 가족 실천이 (특히 가족제도/가족정책에서) 서사로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적 ‘공백’이 적을수록 모델화된 가족 실천은 덜 왜곡될 수 있다. 이는 성소수자 가족 실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 더 많은 가족 실천의 서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점 역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들은 그것들을 재현하고 동원하는 상황마다 어느 한 측면이 도드라지기도 하는데,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의 익숙한 코드로서의 로맨스, 이 둘간의 사랑을 부각시킨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대한민국이 더 로맨틱해진다'라고 하면서 웨딩사진, 트레일러 등을 통해 사랑스러운 커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이성간의 사랑을 전형적(이라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사랑-로맨틱-결혼(식)'의 코드를 활용하는데, 이 결혼식은 '이벤트-대중성-파급효과-한국의 (긍정적) 변화'라는 연쇄를 통해서 파급효과가 더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 '사랑-로맨틱-결혼(식)' 모델은 특히 드라마(동성커플을 다룬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까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코드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모델은 '드라마 같은' 낭만화된 서사, 현실과는 다른 서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코드는 여전히 강력한 관념과 결합의 양식으로 작동하는 코드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 결혼식은 바로 이러한 대중적 코드를 통해서 "드라마에서 보여주잖아. '사랑-로맨틱-결혼(식)'이라고. 그런데 이성간에는 로맨스 없이도 결혼할 수 있잖아. 그럼에도 왜 우리는 로맨틱한데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라면서 불평 등을 드러낸다. 다만 이러한 서사의 제약은 드라마같이 '그렇게 해서 이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치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넘어 결혼(식) 이후의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성, 즉 이 '도드라진 서사'가 다시 다양한 서사로 이어질 필요성 역시도 제기된다.

제도를 통한 서사, 생애를 통한 서사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서사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제도를 통한 서사의 의미이다. 이 미 이번 결혼식과 같이 오랫동안 동성결합 실천을 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식)이라는 제도화된 방식으로 서사가 등장할 때 그것이 결혼식 이전의 실천에 대한 것과는 또 다른/새로운 지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다른 동성결합 커플들의 결혼식의 사례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결혼식이라는) 제도를 통한 서사는 '확실한 것이 없는' 동성결합의 관계와 관련하여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돌봄, 책임, 경제적 공동체의 이야기와 모델이라는 점과도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관계의 서사가 지지되는 것은 이를 통해 사적 안전망/안정망을 구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안정망이 작동된다는 것과 분리되기 힘들다. 제도를 통한 서사는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안정망이 작동될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지의 망들이 언제나 온당한지를 묻는다면, 이 결혼식의 서사는 또 다시 다양한 이야기로 펼쳐진다. 따라서 결혼식을 통한 동성결합의 서사를 바라볼 때, 이러한 돌봄, 책임, 경제적 공동체라는 가족제도의 모델과 제도적 안전망/안정망을 하나

의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둘러싼 현실과 이야기들이 오히려 다양한 가족 실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의 시점으로서의 결혼식을 넘어, 동성결합의 서사들을 보다 장기적이고 생애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역시 보여준다. 돌봄, 책임,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모습과 사적/사회적 안전망/안정망은 생애의 위기들 - 경제적 위기, 질병, 관계의 해소, 죽음 등에 있어서 커다란 힘을 작동시키고 이에 따른 사연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안전망/안정망의 구축, 그리고 그것의 작동을 둘러싼 서사들을 통해 지금의 사회 속에 놓여 있는 동성결합의 실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애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동성결합의 서사는 차별과 배제, 대안성, 또는 로맨스 등으로만 치환되지 않고 이것이 교차, 반복,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다양한 가족 실천들을 드러내고,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들이 생성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생애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다.

4. 마치며

“가족이라고 이름 붙으면-”

“그 이름이 다 해결해줘.”

“(이구동성) 맞아,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안 붙었으니까, 문제를 말로 표현하고 계속 조율해야 돼. 매번, 우리한테 당연한 건 없는 거야.”

“매번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잖아. 그게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좋아, 여기가.”¹⁷

위의 인용문은 ‘공동체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세 여성의 대화이다. 이들은 ‘식구’ 혹은 ‘가족’이라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가족 행각’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 대화는 제도적으로 ‘가족’이라고 호명되지 않는 가족 실천들의 의미를 보여준다. 이를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에도 대입해 보면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모토가 향하는 것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지만, 어떠한 이름도 없는, 그래서 이름도 스스로 붙일 수 있는 이 결혼식의 실천에는 그 어떠한 ‘당연한 건’ 있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여러 실행을 통해 이것들을 채워넣는 기획이기도 할 것이다. 또 이를 넘어서 <당연한 결혼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역시도 ‘문제를 말로 표현하고 계속 조율’해야 하는 것이 되며 ‘매번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17 몽,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어요」, 스토리북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언니네트워킹/가족구성권연구모임, 2012, 153쪽

기도 할 것이다.

이 발제문은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고정된 가족제도라는 틀을 넘어 ‘가족하기’의 관점을 가지고,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을 시간성과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이들의 동성결합 실천을 포함하여 기존의 규범적 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가족 실천을 지지하면서, 다양한 생애를 구성할 권리로서 이러한 실천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이번 결혼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 실천들을 상대화하면서, 그 실천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의미들, 특히 그 이면의 의미들과 욕망들, 그리고 제도와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고, 결국 동성결합 실천을 넘어 다양한 가족 실천들의 의미는 더 많은 실천들과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보다 많은 가족 실천들이 필요함을,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한 용기와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수 있음을, 또 그 가족 실천의 서사를 풍부하고 생생하게 공유하고 질문을 던져가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계기와 화제를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보다 나누기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을 사흘 앞둔 오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서사들을 그 현장의 안팎에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의미화할 것인가를 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성소수자/커뮤니티는 어떠한 가족 실천을 하고 있고, 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이를 통해 어떠한 생애를 기획하고 구성해 나가려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위치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실천과 의미화에 있어서는 단일하지 않은 모습과 목소리가 오히려 유효할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성결합의 의미는 단일할 수는 없고, 커뮤니티 내부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을 비롯해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대되고 필요한 이유이다.

토론 1: 그루터기 내에서의 새로운 가족형태 구상

크리스(그루터기)

그루터기의 회원들은 30대 이상 레즈비언들의 친목모임이다. 올해가 16년째 되는 해인데 모임을 하다 보니 외국인도 들어오고 20대 특별회원도 생겼다.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해서 모임을 갖고 후배그룹도 조금이지만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무지개 행동에도 참여 하게 되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커뮤니티로서 오늘의 발제도 회원들의 삶에는 도전이 되고 lgbt 그룹들과도 교류하는 시간의 연장선이 되기를 바란다.

그루터기 회원들이 새로운 가족형태를 구상함에 있어 이성애자 결혼을 그대로 도입하고자 하는 원론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의 이성애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만큼 새로이 구상해서 합리적이고도 동성애자들의 욕구를 잘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누었다.

새로운 가족 구성권에 대한 구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에 대한 이슈만큼이나 근원적인 에너지를 요구하고 지난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또 있을까? 그래도 해야 한다 라고 믿는다. 이런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시간에 참여하게 되니 마치 들꽃(이 세상에, 온 우주에 우리를 돌보아 주려는 기운이 있다)이 된 마음이다.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

1) 결혼, 사실혼, 파트너십과 같은 기본적인 관계는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개개인의 취향과 파트너 혹은 가족들의 선호도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성애 혼인과 동등한 결합, 결혼하고 싶지 않다, 상속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연금승계등의 다양한 욕구가 있다.

2) 파트너 등록제(registered partnership), 시민결합(civil union), 시민연대협약(PACS)등은 그 내용과 범위가 국가나 사회의 상황과 이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나올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적·의료적 측면에서의 의견

1) 상속·연금·보험혜택

① 상속권,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의료보험 피부양자로서의 혜택, 상속, 국민연금 등의 각종 사회복지 수급권과 주택임대차 승계권 등의 법적 가족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혜택을 주장한다.

② 월급에서 배우자수당, 파트너와 헤어질 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 경조사비, 경조사에 따른 휴가 혜택,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주장한다.

2) 의료적 상황

① 파트너에 대한 의료 친권 행사 예) 수술 전에 보호자 서명란에 서명, 수술 중이라도 환자를 대신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의사와 보호자로서의 대면권 등을 주장한다.

② 파트너가 의료 진료를 받는 동안 중환자실에서나 긴급 사안이 생겼을 때 곁을 지킬 수 있거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③ 파트너 사망 시 유족으로서 권리 행사 예를 들면, 상주가 되는 것, 장례절차에 참여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장한다.

가족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L.들만의 고민

1) 가족들에게 파트너를 파트너라 혹은 동성애자 친구라 소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복잡한 상황의 에피소드

① 자동차를 함께 구입할 때

② 파트너를 룸메이트로 소개

③ 싱글 혹은 파트너 있는 L. 선보기

④ 딸과 딸 친구 자리 정하기

⑤ 하루가 멀게 자주 만나고 일주일 중 반은 같이 지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친구이상으로 설명하기 난처함.

2) 직장동료나 이웃들과의 에피소드

① 직장동료가 파트너와 길 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들은 말인데 서로가 달리 들었다고 한다. “저 선생님, 결혼 안 했더니 저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 라고 한 사람은 듣고, “남편인가?!” 라고 한 사람은 들었다고 한다.

② 직장에서 왜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파트너가 있다. 신경 꺼라.” 등의 말로 대응을 한다. 정체성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놓고 동성파트너가 있다고 하는 무모함은 가급적 피한다.

③ 사는 지역에서 직장동료들을 만날까봐 손을 안 잡고 다닌다. 한번은 동료들 만나 손을 심하게 뿌리 쳤다가 파트너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몇 일후에 있을 김조광수-김승환님의 <당연>하지만 용기 있는 결혼에 축하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두 분의 행복뿐 아니라 부디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안 된다는 금기가 깨지고, 금기는 금기였을 뿐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법적 권리가 일상화가 되는데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으로 멀리멀리 퍼져나가고 LGBT 그룹들도 새로운 용기와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토론 2: 동성결혼의 의미와 실천적 전략

여기동(동인련, 간호학 박사(PhD))

1. 동성결혼의 정의

동성결혼이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성애자 간의 사회적, 법률적 결혼을 의미한다(Wikipedia, 2013). 동성결혼 합법화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이었다. 그리고 2013년 브라질, 프랑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영국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 4년간 총 9개 국가로 확산 되었다(Wikipedia, 2013).

이와 같은 동성결혼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결혼에 관한 개념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사전적 정의는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로서 살기로 맺은 결합'으로 이성애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성결혼을 내포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맺은 결합'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런 변화는 동성결혼이 정치, 사회, 문화, 인권 분야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 되고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2. 한국 동성결혼의 의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동성결혼식은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인가? 이 질문은 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 김승환씨 커플의 공개적 결혼식을 통해 더욱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집단은 인간의 보편적 평등권, 선천적 성정체성의 인정의 관점에서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보수 기독교를 비롯한 동성결혼 반대 집단은 성서적 관점에서 비윤리적, 창조질서 그리고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이 정상이고 자연스럽다는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김조광수 커플 결혼식의 경우, 자신들의 결혼이 [당연한 결혼식] 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들을 지지하는 그룹은 [이 결혼 찬성일세]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김조광수 커플과 본 토론회에 참여한 청중에게 묻는다. 본인들은 동성애자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본인들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결혼식에 관한 필자의 최종 의견은 확고하게 [이 결혼은 당연하며 정당한 권리가 있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그러므로 이 커플의 결혼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 결혼을 통해 보다 더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3. 동성결혼에 관한 전문가 단체의 주장

전문가들은 동성결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위키페디아 (2013)에 의하면, **미국 심리학회**는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차별이며 불평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그리고 **미국 사회학회**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관계, 즉 이성애자 결혼 만으로 정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4). 또한 **미국 인류학회**는 동성 파트너십을 포함한 광범위한 가족 형태가 안정적인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2005).

이러한 학술단체의 주장에 근거하여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고 평등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구조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김조광수 커플의 [당연한 결혼식]은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의 지평을 넓혀 동성애자의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학술단체는 아직까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 학술단체도 이성애자 결혼의 협소함과 배타적인 관점 이 매우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는 것과 동성결혼의 긍정적 의미와 효과를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동성결혼권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이다.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동성애혐오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사회 구조는 성소수자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학교, 직장 그리고 결혼제도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여 청소년 왕따, 자살 또는 사회적 고립을 야기시킨다. 동성결혼 또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간절히 결혼이 좌절되어 정신적, 사회적 분노감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게이, 레즈비언 의료인 연합회(**Gay Lesbian Medical Association [GLMA]**, 2013)는 동성결혼이 LGBTQ와 그 가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성결혼은 성소수자 건강과 장수에 기여할 수 있다

동성결혼은 배우자에게 건강보험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부여한다

동성결혼은 의료적 의사결정과 같은 의료적 권리를 보장한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게이, 레즈비언 커플과 그들의 자녀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건강의 정의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매우 많다고 사료된다.

5. 동성결혼법 제도화 및 다양한 실천 전략

① 제도의 선택: 동성결혼법 Vs 시민결합법

외국의 경우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동성간 결합이 결혼법과 시민결합법으로 제도화 되었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20년이 경과하였다.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교과서 개정, 군형법 개정 등 다양한 인권증진을 위해 이슈 파이팅을 해왔다. 이런 커뮤니티 운동의 경험들은 동성커플의 결합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동성간 결합은 이성애자 결혼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법과 동성배우자에게 혼인관계에 준하는 권리를 대부분 보장하지만 입양을 제한하는 시민결합법(또는 파트너십 등록법)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유형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인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성결혼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동성결혼의 충격(?) 또는 호모포비아의 공황상태로 인한 동성결혼의 강력한 반대(counter-reaction)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민결합법으로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동성결혼법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 전략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

② 동성결혼 획득을 위한 전략: 무엇을 할 것인가?

동성결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시-사회-문화-인권적 맥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화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법적 투쟁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 위법임을 증명해주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증오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보수기독교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조광수 커플은 결혼식 후 혼인신고와 헌법소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반려 받았을 때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해야 한다. 그리고 남·여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에 관해 위헌소송이 필요하다. 이런 단계적 투쟁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판단된다.

-언론을 통한 이슈화

김조광수 커플의 공개 결혼발표로 언론은 많은 관심을 인터뷰하여 기사화 하고 있다. 이 커플은 자신들의 결혼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전국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언론을 통해 동성결혼이 이슈화 되고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와 사회적 동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학문적 토론과 견해 발표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위한 학문적 토론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학문적 집단의 견해 발표처럼 법학 뿐 아니라 간호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문화학, 인류학, 인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회를 통해 동성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학회의 견해가 발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견해는 성소수자 인권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LGBT 커뮤니티의 역량강화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동성결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동성애자 자녀들의 부모와 이성애자 등의 그룹을 조직화 해야 한다.

참고문헌

Wikipedia (2013, September 3). Gay Marriage. Retrieved from http://en.wikipedia.org/wiki/Gay_marriage

Gay Lesbian Medical Association (2013, September 3). Same Sex Marriage and Health. Retrieved

from <http://www.glma.org/index.cfm?fuseaction=feature.showFeature&FeatureID=360&E:\ColdFusion9\verity\Data\dummy.txt>

토론 3: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토론문

김순남(여성학자)

“질문과 이야기가 모이는 자리”라는 발제문의 취지와 다양한 욕망들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토론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또한, 가족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유동적이며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해체, 재구성되는 과정이며, 생애과정에 걸쳐 수행되는 삶의 양식, 관계맺기의 다양성과 결합된다는 발제문에 동의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발제문은 동성결합(동성결혼)을 제도화의 과정과는 별개로 ‘가족실천’의 하나의 양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면서도 과연 동성결합(특히 동성결혼이라는 실천)이 제도화와 무관하게 사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든다. 동성결혼이 제도화와 무관하다면 왜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방식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결혼제도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역설적으로 결혼제도로부터 비승인되는 퀴어의 삶이 향유한, 창조해 온 삶의 양식이 행복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결혼제도는 권리나 제도 이전에 삶의 욕망이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구성하고, 그러한 가치에 기반을 두면서 위계적이고 권력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때, 동성결혼을 통해서 재구성될 수 있는 성소수자들의 삶의 욕망, 방식, 전망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에 “갑툭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툭튀’ 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동성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명되기 전에 이미 동성결혼은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로서 설명되며, 각국의 인권의 지표로 표지되고, 또한 보수주의자들의 적극적인 공격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치않게 동성결혼은 반대/지지로 구도로서 설정되는 상황이다. 이러할 때, 다양한 삶의 방식, 관계맺기에 기반을 둔 삶의 정치(life politics)의 확대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동성결혼이 아니라 이성애 규범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법적인 권리로 이어지면서 법이 성적소수자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본다(Michael Warner, 1999). 이러한 고민을 가지면서 몇가지만 같이 논의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한다.

1. 결혼과 비결혼 구도의 위험성

결혼대 비결혼의 구도는 이성애규범성이 특권화해온 로맨스의 신화, 커플방식, 상호책임 방식, 영원성, 배우자 중심의 돌봄과 경제적인 부양 등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결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샵-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혼과 비결혼의 구도는 성적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결혼제도 내부에서도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계급, 이주, 장애, 인종, 젠더 등을 통해서) 불평등성을 문제시하기보다는 결혼을 통한 승인이 중요한 해결점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또한, 결혼대 비 결혼의 구도는 다양한 성적실천, 삶의 방식을 차별화하는 사회적인 환경, 호모포비아, 규범성에 도전하기 보다는 이성애규범적인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결혼을 통한 사회적인 인정 정치**는 **불평등을 지속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럴 때, 성적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실체는 결혼제도로부터의 배제라기 보다는 **특정한 삶을 정상화하는 이성애규범 자체로부터의 차별**이며, 그러한 규범을 통해서 퀴어의 삶을 '실패'한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결혼제도의 비틀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성적지향과 무관하게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략보다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랑의 풍부함을 결혼이라는 제도가 절대 포섭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주요하게 결혼제도를 비트는 전략이 아닐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사랑이 분리되고, 무수한 결혼이 깨지고 있고, 선택적 결혼 지연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한다는 등식보다는 결혼을 통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이성애규범적인 생애서사의 한계를 좀더 전면에 내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즉, **동거대상과 파트너가 분리되는 현상들에 주목함과 동시에, 배우자 중심의 가족임금 체계의 한계를 지적해야 하며, 돌봄의 대상과 파트너와의 연결을 강제하는 정상적인 삶의 모델에 대한 다각적인 비틀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국가에게 성적소수자의 삶에 대한 인정을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식하는 시민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 정상적인 삶의 모델의 취약성을 재고찰하도록 촉구하는 적극적인 말걸기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생애결정권이나 생애를 구성할 권리에서 무엇을 주목해야만 하는가?

생애를 구성할 권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맺기 방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실천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즉,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체계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나이에 대한 불안감, 돌봄 부재의 가능성, 사회적 자원의 취약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 속에서 위치지어지는 것이다(발제문에 기반해서 서술). 동성결혼을 하고자 하는 욕망 혹은 거부하는 욕망 또한 사회 내부의 규범들-나이, 계급, 젠더규범-과 분리되지 않고 작동되기도 한다.

밑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의 한 부분이다. 밑의 두 사람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동성결혼이 중산층 중심의 '선택'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방식에서 사실은 중산층은 동성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로도 연결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계급적인 자원이 부재한(특히 나이든 레즈비언인 경우는) 선택을 하고자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이중적인 위치가 동성결혼과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55세 레즈비언(기술직 노동자) 이야기

1. 본인: 만약에 동성결혼이나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레즈비언: 좋지

본인: 왜요?

레즈비언: 왜긴 왜야? 우리가 하고싶은게 그런건데. 하고 싶은게 결국 동성결혼 아니냐.

본인: 결혼하고 싶으세요?

레즈비언: 하고 싶지.

본인:선배님 이렇게 많은 여자를 좋아했는데 한 사람하고 살수 있을것 같으세요?

레즈비언: 당연하지. 하하하.책임감이 생길것 아니야 그렇게 되면 서로가 호적에 올라가는데 꼼짝 못하잖아

2.어. 지나간 세월은 허무해. 아무것도 이뤄진것도 없잖아. 솔하게 많은 사람을 사겼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돈 벌어 놓은것도 하나도 없고 내 삶은 뭐였는가. 내가 왜 살았던가. 왜 살았을까.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

B) 29살인 게이(전문직)의 이야기

1. 근데 저는 결혼 말고도, 그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대안 가족, 그런,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람들에게 강요됨으로써,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있는 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실상이니까, 그런 부작용이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강요됨으로써 있는 거고, 이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왜 너는 동성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떤 두 사람의 관계, 저랑 개의 관계를 법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 사람과 계속 지내면서 행복하다면, 저는 결혼을 안 해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것과 안 한 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계속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이라는 건 분명 발목을 잡을 거예요.

2.(소중한 사람들과) 그냥 멋지게 늙은, 나이스 미들. 예를 들면, 집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품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두 번째 워크숍-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요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때는 더, 아마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겠죠,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뭐 집이나, 차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위의 두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이 동화주의이며,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전복적이다라는 구분을 넘어서 나이, 계급적인 자원, 삶의 네트워크 자원에 따라 동성결혼에 대해서 진정 '선택' 혹은 '비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요구한다. 특히, 나이와 사회적인 자원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동성결혼이 유일하게 삶의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도 의미화 될 수 있기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4) 이성애규범적인 결혼 너머에 대한 급진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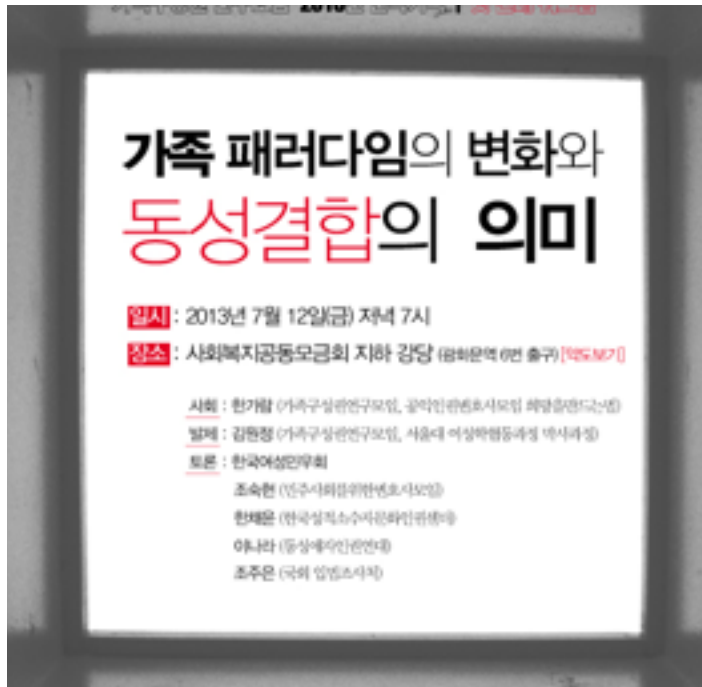
동성결혼 운동은 결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결혼제도의 불평등성에 대한 문제제기, 젠더규범 비틀기, 사회적인 연대의 확대, 주변성의 모색등은 동성결혼 획득 유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젠더규범에 대한 비틀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온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 과정은 개인적으로 결혼 유무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고, 그러한 의례를 통해서 조직해내는 논의의 과정은 사회적인 장으로서의 결혼식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행위임은 자명하다.

이렇듯, 동성결혼이 어떤 논의로 수렴될지는 미리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다양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과정임에는 분명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바대로 “제도를 통한 서사를 넘어”서 다양한 생애과정을 지지하고, 상상하고, 실천하는 삶의 정치로서의 퀴어 정치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첫 번째 워크숍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일시 : 2013년 7월 12일(금) 저녁 7시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 강당



사회 | 한가람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 김원정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토론 | 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조숙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나라 (동성애자인권연대)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김원정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목 차

1. 논의를 제안하며
2.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혼의 역사적 위치
 - 가. 규범적 가족에 대한 제도 안팎의 도전
 - 나. 성소수자 운동에서 가족 관련 논의와 실천의 전개
3. 한국사회 가족의 변동과 가족 패러다임의 전환
 - 가. 가족 변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나.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실천으로서 가족
 - 다. 새로운 파트너십의 제도화: 생활동반자/공동체 관계
4. 가족 전환 프로젝트로서 동성결합
5. 마치며: 어떻게 담론장을 형성할 것인가

1. 논의를 제안하며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어 온 동성결혼 인정을 둘러싼 논의는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우루과이, 브라질 등에서 올해 공식 동성결혼 커플이 탄생했고 얼마 전 미 연방대법원의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캘리포니아 주민발의8 각하 사건은 자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동성결혼 인정 투쟁을 고양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사회에도 동성결혼이라는 화두가 본격적으로 던져졌다. 지난 5월 김조광수-김승환 게이 커플이 결혼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9월초 결혼식을 시작으로 법제도적 변화

를 촉구하는 실천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히,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올 하반기, 그 이후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조-김 커플의 공개결혼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성결혼이라는 이슈가 한국에서 ‘도’ 제기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이는 한국사회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성장, 기존의 가족 규범에 도전해 온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들의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실천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것이 결혼-가족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또한 많은 부분 운동과 실천의 몫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그동안 우리 모임이 진행해 온 한국사회 가족 현실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가족의 이론화, 그리고 대안적 가족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 속에서 동성결혼을 의미화하고, 이를 계기로 기존의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2006년 결성 당시부터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 아닌, **동성 파트너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동반자/공동체 관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 왔다. 이것이 기존의 가족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정상가족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는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모임은 동성결혼과 동성 파트너 간 생활동반자 관계 중 **어떤 것이 동성결합 18을 제도화하는 보다 나은 방식인가를 선택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동성결합이 한국사회 가족제도 안에 자리 잡는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의미화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기존 문제의식을 거칠게나마 정리하면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합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갈 주체들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담론과 실천을 어떻게 한국사회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 이르기 위해 이 글은 먼저 동성결합을 규범적 가족제도에 균열을 내고 전환을 모색해 온 다양한 실천의 연장선상에 위치 짓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제도가 요청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동성결합이 어떤 ‘전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 정리한다.

2.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혼의 역사적 위치

김조-김 커플의 공개 결혼은 ‘갑툭튀’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은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는가.

지금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임은 그동안 규범적 가족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들이 남긴 성과와 한

18 이 글에서 동성결합은 동성 파트너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방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동성결합이 법제도 차원에서 인지, 인정되는 방식으로는 동성결혼의 허용, 결혼이 아닌 다른 파트너십 제도화의 형태로써 생활동반자 관계의 제도화, 그 외 다른 형태들이 있을 것이다.

계, 성소수자 운동에서 동성에 친밀성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어 온 과정,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성소수자 개개인들의 실천 속에서 지금 한국사회에 던져진 동성결혼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 규범적 가족에 대한 제도 안팎의 도전

2000년대 들어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쟁이 무르익고 기존 가족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한국사회에는 이른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증가했다. 가부장적 부계혈통에 기초한 가족제도가 ‘정상’에서 배제해 온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비혼모, 입양가족 등이 새로이 주목을 받았다. 그전에 없었던 ‘다양한 가족’이 새삼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지만, 당시 국면에서 이들이 비로소 가시화되고 조명을 받으면서 50여년 간 제기되었던 가족제도와 정책 변화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의 현실과 요구는 호주제 폐지와 이후 가족 관련 법제, 신분등록제 변화 과정에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 오랜 세월 한국 가족의 구성 원리로 당연시 되어 왔던 부계 혈통주의가 완화되고 민주주의와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그 빈자리를 채웠지만, 이성애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또한 개인의 신분적 지위를 확인해 주는 장치라는 관념은 도전받지 않았다. 이는 호주제 상의 家 개념의 삭제를 보상하듯 신설된 민법 상 가족 규정 19으로, 가족관계의 증명을 벗어나지 못한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그렇게 보면 호주제 폐지 국면과 이후 10여년은 이성애 정상가족과 다양한 가족의 경계가 다시 그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당시 가족제도 변화를 둘러싼 혼란이 증폭되던 시기를 틈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건강/비건강이라는 규범적 잣대를 근거로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 수준을 결정짓는 가족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건강가정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은 가족의 정의 밖에 있거나 그러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족을 ‘건강가족’으로 선도한다는 관점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족정책의 범주에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다양한 가족’은 이성애 핵가족이 아닌 것, 정상가족의 외부로 정의되는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에 배치된 사람들은 가족제도 밖에서 독립과 함께 살기를 넘나들며 친밀성과 돌봄을 조직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만들어 왔다. 동거커플, 비혼/공동체, 장애

19 민법 제4편 친족편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인과 청(소)년 자립생활공동체 등 자력화의 모색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 변동의 지표들이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점차 제도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다. 그 결과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비혼 여성이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동성애자들이 서로의 파트너로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 가시화 되고, 이러한 형태가 왜 기존의 가족과 다르게 여겨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차별/평등의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면서 부터다. 제도 밖에서 따로/함께 살아가는 동성커플이 가족제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성결혼이 제안되고 이를 현실화, 공론화할 수 있게 된 조건은 앞서 말한 '다양한 가족'들의 실천과 이를 둘러싼 한국사회 가족 담론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성소수자 운동에서 가족 관련 논의와 실천의 전개²⁰

성소수자 운동에서 동성결합의 제도화 방안이 처음 공론화 된 자리는 2004년 6월 퀴어문화 축제 기간에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토론회였다. 이 자리는 동성애자의 사회적 권리를 결혼과 관련시켜 공론화한 최초의 자리로, 지인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게이 커플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족의 경조사 휴가, 보험금 상속 등에서 이성애 커플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표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철폐, 인권 존중을 위한 투쟁 속에서 어떻게 제안되어야 하는지, 법적 인정을 위한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해 12월에는 동성커플로는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린 게이 커플이 등장했고, 혼인신고서를 냈으나 접수 5시간 만에 수리가 거부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후 동성결합에 관한 논의는 가족구성권의 권리라는 보다 확장된 맥락으로 나아갔다. 2006년 9월 친구사이가 주최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토론회>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구조의 변동과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연결시켜, 가족중심 이데올로기 강화에 공모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여 동성결합 논의의 지평을 확대했다. 표면적으로는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²¹이냐가 쟁점화 되는 듯했으나, 어떤 방안이든 민법을 비롯한 여러 법·제도상의 가족 개념을 재구성하고 정상가족을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는 생활동반자/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방안을 (본의 아니게 은밀히) 모색해 온 가족

20 2012년 2월 KSCRC 아카데미에서 발표된 타리의 <가족구성권과 동성결혼 운동의 의미와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함.

21 당시 토론회에서는 프랑스 사례를 통해 '사회적 결합'이란 용어로 소개되었음.

구성권 연구모임 안팎의 논의를 제외하면, 동성결합 이슈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파트너십을 ‘결혼’으로 의미화 하는 커플들의 사례는 꾸준히 이어졌다. 또한 동성애자의 가족 실천은 파트너 간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원가족 내에 자신을 위치 지으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사위/며느리라는 성별화 된 역할 체계로 짜여진 가족 안에서 동성애자인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고민하는 과정은 한국사회 가족의 규범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 위에 동성결혼이라는 화두가 던져짐으로써 지금 우리는 단순한 찬성/반대, 동등권 실현의 차원을 넘어서 동성결혼을 보다 풍부하게 의미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가족 변동과 규범적 가족의 전환에 관한 논의 기반 위에서 동성결혼을 사 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변동’과 ‘전환’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동성결합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고민을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3. 한국사회 가족의 변동과 가족 패러다임의 전환

가. 가족 변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년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한국사회의 가족 변화는 이제 늘어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내 지 가족 변화의 양상들을 모두 리스트-업 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 같다. 너무나 역동적 인 오늘날 가족 변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가족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시대(함인희, 2010)”라는 규정 외에 무엇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

이성애 가족 모델의 규범성이 약화되면서 마치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신인류(?)가 탄생한 듯 쓰여 지던 가족 변화에 대한 설명은 이제 유효성을 상실한 것 같다. 저성장, 노동시장 유연화,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특정한 가족 모델의 쇠퇴에 국한되지 않는 친밀성과 유대의 소멸, 관계의 단절, 돌봄의 공백을 초래하며 많은 이들의 삶을 보다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애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 생애 모델이 약화되고 있다. 이른바 결혼 적령기, 출산 적령기 등 가족 구성의 생애 단계가 규정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 결혼으로 시작해서 은퇴와 노후에 이르는 가족 생애는 더 이상 두 파트너 간의 고정되고 안정된 일대기의 결합으로 볼 수 없다. 개인의 생애에서 가족의 구성, 해체, 재구성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며, 결혼 지연, 이혼 증가, 고령화는 개인의 일대기에서 더 많은 기간을 홀로 사는 상태에 놓이게 하고 있다.

둘째, 청년 세대에게 부과된 사회적 불안은 가족을 둘러싼 계급, 젠더 위계를 강화하고 친밀

성의 실천들을 지체시키고 있다. 중산층에서는 생존을 위한 가족 유대가 강화되고 반대로 빈곤층에서는 이산과 해체가 나타나는 상황이며, 불안정한 지위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청년층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결혼을 유예하거나 성공적인 '취직'을 시도하는, 제한된 선택지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 능동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결혼-가족이라는 장기적인 시간성을 공유하기 어렵게 된 청년들 사이에서 경제적 필요에 의해 동거를 선택하거나 다른 생활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간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은 평생,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도리어 청년 세대의 가족 구성(이성애 가족의 형태이든 어떤 방식의 친밀한 유대관계이든)을 지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경제 위기나 불안정한 미래의 안전판으로서 가족 기능은 날로 취약해 지고 있다. 사실 안전판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부재했던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가족 기능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 '의지할 곳은 내 가족 뿐'이라는 관념은 허위에 불과했고, 때문에 가족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보다 약화시키거나 해치는 상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하겠다고 답한 자녀들). 그럼에도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의 모자란 기능을 보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은 가족형태에 따라 차등화 되고 있다.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조손 가족 등 특정한 가족형태가 구호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정상가족을 중심에 둔 가족 서열화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위기의식과 함께 가족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이전보다 많이 줄었고 과거 가족구성원 누군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 외부의 자원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책은 돌봄을 상품, 돌봄수혜자/제공자를 소비자의 위치에 두며, 위기를 오로지 비용 부담의 문제로 본다.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도구적 접근이 초래한 지금의 현실을 보며, 과연 우리사회가 돌봄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한 적이 있는가, 비용 지원이 사회적 돌봄의 실현하는 유의미한 방식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돌봄을 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만의 문제, 즉 가족의 자기 재생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동시대의 개인 또는 세대 간의 유대와 공존을 위한 기획으로 의미화함으로써, 기존 가족제도 안팎에서 상호 돌봄을 수행하는 개인들의 실천을 드러내고, 돌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실천으로서 가족

위와 같은 가족 변화는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 자체의 재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어떤 가족 생애 모델이나 특정한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두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통하는 가족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단위'로서 가족을 상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모든 가족정책은 개인의 생애에서 특정 시기만을 정책 대상으로 인지하거나 가족관계에 진입하지 않는 개인

들을 아예 배제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족을 결혼과 재생산을 전제로 한 규범적 이성애 가족으로 전제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성을 형성해 나가는 개인들의 실천 또한 인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성애 정상가족의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둔 채 바깥의 개인 또는 '유사' 가족들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원한다는 관점은 이미 변화하는 가족을 포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대안적 가족 논의의 출발점으로 가족을 규범적인 형태의 고정된 단위로 보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실천하는 개인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08). 이는 가족을 '개인이 수행하는 실천' - 집합명사가 아닌 동사적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오늘날 가족의 유동성을 설명하고 개인이 가족 '유닛'에 속해 있는 상태와 무관하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행하는 친밀성과 돌봄, 경제적 협력 등의 가족 실천을 포착하고자 했던 모건(1999)의 논의와 연결된다.

이처럼 단위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실천하는 개인에 주목하는 관점을 채택한다고 할 때,

- '방식'은 제도화 되어 있는 관계 형성의 방식들(결혼, 출산, 입양 등)과 그것이 아닌 다른 관계 맺기의 방식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 다음으로 '가족 실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가족을 단위/형태로 접근하는 관점은 '모든 가족'이 규범적으로 할당된 가족 기능을 총체적으로 담지해야 한다는 당위를 전제하고 개별 가족에서 부족한 기능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설정한다. 그러나 가족 실천은 친밀성, 돌봄, 경제적 협력, 부양, 성애적 사랑 등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여러 가지 속성들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개인의 가족 실천이란 단위/형태와 무관하게 이러한 속성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일 수도, 여러 속성들을 선택적으로 조합한 것일 수도 있으며, 다중적인 위치(예컨대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또한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다르게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족은 특정 속성들로 먼저 정의된 후 현실에 적용되는 틀이 아니라, 속성을 수행·조합·배치하는 개개인의 실천의 결과로서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은 '가족 하기'의 유동성과 개방성에 주목할 수 있다. '방식'과 '가족 실천'의 결합은 하나의 안정적인 형태로 귀속되지 않으며, 생애에 걸쳐 특정한 방식과 특정한 가족 실천을 결합, 유지, 해소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개인들 간의 관계와 그 속성, 실천에 접근하면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의미가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 '가족'이란 용어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기존 가족으로 포착되지 않는 구조와 실천을 포괄하기 위해 가족 실천 대신 '친밀성 실천'이라는 분석 개념을 제안

한 제이미슨(2012)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늘 존재해 온, 가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장해 온 주체들을 드러내고 이들의 실천을 가족의 사회적 의미 변화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가족의 사회적 의미, 여러 가족정책과 제도의 전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다음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이 관점은 개인과 가족, 독립과 함께 살기를 이분법적으로 경계 짓는 사고를 넘어설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는 누구나 가족을 '하며' 누군가와 연결된 개인으로 살아 가고 있다. 개인을 자율적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관계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 상호의존 관계 속에 있는 개인으로 보는 관점에 기초하면, 독립하여 살면서 또한 누군가와 생활을 공유하는 개인, 제도적 가족 관계 속에 있지만 자율적 주체이기도 한 개인들을 사고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정책과 제도의 베이스를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지만, 여기서 개인이란 연결된 개인, 가족 실천을 수행하는 개인이란 점에서 이전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관점은 가족에 관여하는 국가의 역할, 가족 실천을 둘러싼 개인-사회-국가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을 요청한다. 국가는 이전과 같은 기능주의적, 규범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족 실천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적-사회경제적 제약을 제거하고, 개인에게 가족 실천이 과도한 책임과 의무로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속성의 가족 실천들을 개인-사회-국가가 분담하고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구성, 유지, 해소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구성원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기존 관계의 해소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특정 구성원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관점은 이제까지 규범적 가족 형태나 기능을 전제함으로써 가족을 정의하고 인지하는 데 있어 그것에 '미침/못미침'(정상/비정상, 보편/특수, 중심/주변)이라는 잣대를 필연적으로 작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고 해서 곧바로 기존 가족의 규범성과 정상성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으로, 결혼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의 관계가 제도화된다 하더라도 결혼의 독점적 지위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때문에 대안적 가족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관점을 단지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이성애 규범과 젠더 규범을 포함하여 가족의 정상성을 규정해 온 모든 것과 거리를 두고 '방식'과 '가족 실천'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해 나가는 것, 다른 여러 방식과 실천의 속성들을 제도에 기입하는 것은 기나긴 실천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수많은 과제가 제안될 수 있겠지

만, 우리 모임이 주목해 온 것은 **관계 형성의 유일하고 규범적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상대화하는 전략**이다. **특정한 속성의 가족 실천을 공유하기로 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거한 생활동반자/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될 수 있다.**

다. 새로운 파트너십의 제도화: 생활동반자/공동체 관계

파트너십에 관한 해외 입법은 **주로 법률혼에서 배제된 동성커플이나 결혼 관계로 진입하기를 거부한 이성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서 발달한 측면이 있다.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PACS)과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이 대표적인 입법례이다.

우리 모임은 이 법률들을 참고하여 생활동반자/공동체 관계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것을 전통적 법률혼의 모사 내지 보완이라고 보는 관점과는 거리를 두어 왔다. 파트너십은 반드시 두 사람 간에만 가능한가, 꼭 성적 결합에만 기초해야 하는가, 기존 결혼 관계를 정의해 온 모든 기능 내지 속성을 담지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어찌 보면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어떤 제도를 상상해 왔으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내놓기 까지 아직 풀어야 할 많은 논점과 숙제들을 남겨 두고 있다.²²

현재까지 논의를 통해 구상하고 있는 제도의 상은 이렇하다. 성별과 무관한, 2인 이상의 생활동반자들이 맺는 생활동반자/공동체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라기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자율성과 상호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협약 내지 협정의 형태를 띠 수 있다. 이 협약은 기존의 결혼 제도가 규정하는 상호의무와 신분관계, 상속 등 재산관계, 친족관계, 자녀관계 등을 다른 방식으로 포함하거나 조합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유지·해소하는 것은 그것을 맺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지지만, 이러한 협약이 제도 내에 등록될 경우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은 이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개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등록은 협약 당사자들에게 사회·경제정책(과세, 사회보험 등)을 적용하는 방식의 변경을 의미할 수 있다.²³

이것이 제도화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성애 동거커플, 동성커플, 여러 자립생활공동체들이 협

22 2005년 결성된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Feministiskt Initiativ, FI)는 창당 후 처음 치른 2006년 총선에서 결혼제도를 대체하는 동거법(samlevnadsbalk)을 제안했다. 이 제안의 취지는 결혼에 포함되어 있는 법적·경제적 계약이 ‘사랑의 선언’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는 가계를 함께 꾸려 가고 있는 두 형제자매일수도, 생계를 함께하는 18명의 사람일수도, 이성애/동성애 커플일 수도 있다면, 국가 차원의 법적·경제적 보호가 낭만적 사랑의 관계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가는 어떠한 종류의 공동체인가에 상관없이 그에 속한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처: <http://www.feministisktinitiativ.se/artiklar.php?show=58>)

23 현재까지 이 제도에 대해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논의해 온 내용은 2011년 발행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06-2011 활동 자료집> 중 “활동보고4: 파트너십법안 연구”에 정리되어 있다.

약에 의거하여 각각의 관계에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친밀성, 돌봄, 상호 협력 등에 기초한 여러 형태의 관계들이 제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말하자면 생애에 걸쳐 유동적으로 가족 실천을 수행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들을 임시로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동성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성 간/동성 간 결혼을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이 아닌 다른 선택지의 존재, 이 제도를 경유한 개인들의 실천이 결혼의 정상성과 규범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게 하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실천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다.

4. 가족 전환 프로젝트로서 동성결합

앞서 정리한 맥락에서 동성결합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어떻게 의미화 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혼의 제도화 또는 생활동반자/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여부는 미래의 어느 순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이르는 과정과 사회적 담론의 형성**이다. 동성애자들이 결혼 제도에 진입할 때 이미 그 결혼 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의미를 갖겠지만, 그렇다고 동성결혼이 제도화 되는 순간 이성에 중심적 결혼 제도가 완전히 탈바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제도 변화 그 자체도 전략적 실천을 요하는 운동으로 조직되어야 하겠지만, 그 변화의 실질적 의미는 가족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담론의 주류화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합을 대안적 가족 제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위치 짓는 것이 중요하며,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기존의 가족 정상성을 강화하느냐(그러면서 그것을 모사한 이등 지위의 가족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해체-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지향을 견지하며 동성결합을 의미화하기 위해 다음의 관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결혼에서의 평등권 접근이 이성에 가족의 규범성과 정상성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해외 동성결혼 제도화 과정에서 예컨대 동성양친과 이성양친의 자녀가 다르지 않다. 와 같은 동등권 접근에 기초한 판단들이 눈에 띈다.** 동성커플의 재생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개로, 이러한 접근은 양친-자녀로 구성된 가족, 재생산 기능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가족을 정상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결혼-가족 구성의 원리로서 이성에, 젠더 규범의 해체를 지향해야 한다.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은 이성 간 성애적 결합을 모든 파트너십과 가족 관계의 기초로 삼는 기존 제도를 완

전히 새로 쓴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전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젠더 규범의 해체는 성별화된 파트너십을 넘어서는 데서 나아가 젠더화 된 가족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남편/아내라는 명칭과 전제뿐 아니라 엄마/아빠, 아들/딸, 사위/며느리 등 가족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다르게 할당하는 젠더 체계를 재구성하는 실천과 담론이 요구된다. (예컨대 ‘동성결혼은 남자 며느리/여자 사위가 생기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담론화 필요, 성역할로부터 자유로운 가족의 구체적인 상을 그릴 수 있어야)

셋째, 섹슈얼리티, 낭만적 사랑, 재생산, 상호 돌봄, 경제적 부양 등이 모두 결합된 ‘총체적’ 파트너십으로서 결혼의 규범적 의미를 해체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이러한 속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함으로써 선택적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파트너십은 동성결혼 아니면 이성결혼, 동성결합 아니면 이성결합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범주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며 무엇을 공통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 범주를 넘나들기도 하는 관계들이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을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동성커플의 경험은 정상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무자녀 이성커플이나 여러 생활동반자 관계의 경험과 연결되며 연대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혼인·혈연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는 다양한 양태 또한 이러한 연대를 통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제도화 된 파트너십이 갖는 고유한 위험을 주지하는 것이다. 자율적 주체의 자유로운 계약이 비가시화 할 수 있는 위계와 폭력, 어떤 형태이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관계란 존재할 수 없다. 사랑과 결혼, 가족에 내재한 갈등과 위험을 정치의 문제로 제기해 온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5. 마치며: 어떻게 담론장을 형성할 것인가

우리 모임은 올 한 해 동안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합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보다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실천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 첫 워크샵을 시작으로 9월초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워크샵을 열어, 동성결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그것이 성소수자들의 운동과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모임은 아직까지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가족 변동에 대한 진단과 대안적 시각의 이론화, 향후 가족제도가 포괄해야 할 관계 맺기의 다양한 ‘방식’과 ‘가족 실천’의 목록을 구체화하는 작업, 친밀성·돌봄·독립 등 가족 실천의 속성들을 새로 의미화하는 작업(예컨대 장애인·노인을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인식 넘어서기, 동성커플을 성애적 결합으로만 규정하는 고정관념 넘어서기 등), 그리고 이 모든 논의와 동성결합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관련된 실천들을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향후 동성결합에 관한 논의의 장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직은 그 구체적인 상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파트너십 문제에 한정되지 않은, 기존 가족의 규범성에 도전하는 여러 실천과 그 주체들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비혼, 한부모 등 - 은 동성결합에 대한 논의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서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태주시길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08.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담론/제도/사례연구>.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1.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06-2011 활동 자료집>.

타리. 2012. “가족구성권과 동성결혼 운동의 의미와 질문.” KSCRC 아카데미 발표문.

함인희. 2010. “가족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젠더리뷰> 2010·여름호.

Jamieson, Lynn. 2012. “Intimacy as a Concept: Explaining Social Change in the Context of Globalisation or Another Form of Ethnocentrism?” *The Clarion* 1(1).

Morgan, David. 1999. “Risk and Family practices: accounting for change and fluidity in family life” in *The New Family*. Sage.

토론 1 :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1. 토론 취지²⁴

-가족구성권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민우회는 작년에 성평등복지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 안에서 대안적 가족구성권 입법에 대한 고민을 해옴.

-그 고민 내용은 김원정님의 발제문에 담긴 문제의식이나 지향점과 같음.

-동성결혼과 가족구성권 담론을 선택적 문제로 바라보지 말자는 큰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새로운 파트너십의 제도화 부분, 구상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민우회에서 내부적으로 구상했던 법안「성평등복지로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발표했던 생활연대협약법의 성격)의 내용과 비슷함.

-가족구성권을 **성애적 관계, 일대일 관계에 한정하지 않으며 가족구성의 내용은 당사자들 간의 협약에 전적으로 기초하며 이에 대해 국가적 방향성을 법안이 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함.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최근 민우회 활동 영역 안에서 확인됐던 대안적 가족구성권 입법 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으면서, 민우회라는 여성단체의 위치에서 가족구성권 논의에 힘을 싣고 민우회 내부에서 고민했던 지점들을 공유해 논의를 진척시켰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보려함.

2. 대안적 가족구성권운동의 필요와 의미 : 민우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성평등복지운동 측면에서의 문제의식

-성평등복지팀에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검토하고 '성평등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내용을

²⁴ 이 글은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내부 토론 결과를 정리한 대표발제문입니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첫 번째 워크숍-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 것, 성평등복지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현재 복지제도가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

-그리고 그 가족은 돌봄책임자인 여성과 생계부양자인 남성 그리고 자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 (특히 자녀는 많을수록 좋음)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보험금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국가가 법으로 정해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전국민이 가입자인 보험임. 물론 군인이나 공무원등 이미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는데, 주목할 점은 전업주부 역시 의무 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 **개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닌 것.** 이걸 국가가 **노후 보장의 기본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보험에서 인정, 보험 수급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보험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주거복지 부분도 마찬가지. 단적인 예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것들.

○ 성평등복지운동 측면에서의 대안적 가족구성권 논의 방향성

-이런 복지제도는 우선 국가가 사회의 기본단위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족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개인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낳음.

-그리고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문제로 사회안전망을 복지제도가 아닌 가족에게 전가시켜서 가족이 **'사회안전망과 정상성을 획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재생산한다는 점이 있음. 흔한 말로 '늙어서 돈도 못 벌고 아프면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혼해라'라는 말이 가능한 사회가 지속되는 것.

-이런 담론 속에서 정상가족 개념 밖의 파트너십이나 공동체성에 대한 모색과 실천의 여지가 좁을 뿐만 아니라, 정상가족 안에서의 모순이 함구됨.

-따라서 복지제도의 문제 역시 정상가족 단위의 복지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소수자로 위치 지으면서 이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음.

-즉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상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전제되어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복지제도의 개선은 가족구성권을 재구성하는 논의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음

-그래서 복지제도는 개인 단위로 재편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욕구는 가족으로부터 떼어내, 개인 단위로도 생존에 무리가 없는 환경을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실직 상태, 미성년자, 양육과 돌봄 등으로 노동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부조를 가족 안에서의 피부양자 지위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국가적 부조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첫 번째 워크샵-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이 과정 자체가 가족 개념을 재구성하는 효과를 낳기도함, 보육제도가 개인단위로 정비되어 있는 스웨덴의 경우 (여기서 개인 단위 정비의 척도는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이 아닌 공보육 시설의 확충 정도, 스웨덴의 만5세아 가정보육 비율은 4.2%에 불과.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성 노동권 지원 정책이 있었다함) **출산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편인데, 그 출산율의 50% 정도가 미혼모**²⁵라고 함.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개인단위로 재편하면서 동시에 가족 개념은 친밀성과 관계성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개인들이 원하는 경우 다양한 가족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대안적인 가족구성권에 관한 입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한 생활연대협약법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임.

○ 민우회 회원층 내 욕구

① 30대 비혼여성 그룹

-앞에서 이야기한 가족중심적 복지제도에 가장 민감한 체감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민우회 회원층 안에서는 30대 비혼여성**임.

-이들은 실직 상태일 때의 생계 문제, 따라 잡을 수 없는 집세 앞에서 번번히 좌절되는 주거 문제, 불가능한 양육, 암울한 노후, 고독사 같은 키워드들을 자신의 문제로 느끼면서 사회안전망이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재편되기를 요청함.

-이런 요청은 2012년에 진행한 성평등복지 의제발굴 수다회²⁶에서 확인한 것임.

²⁵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13민우여성학교 <먼 나라 이웃 나라 육아 정책> 고양 파주여성민우회

²⁶ 수다회 후기는 한국여성민우회 블로그 <민우트러블 /womenlink1987.tistory.com>에서 확인할 수 있음

"혼자 살 때 계속 월세를 냈어요. 이 월세 부담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싶어서 임대주택을 알아보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나는 결혼할 계획이 없어, 그런데 나는 집이 필요해. 근데 왜 결혼한다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되는거지? 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인간이 생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니가 결혼했기 때문에, 니가 애를 셋을 낳기 때문에 주는 혜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인 독립세대를 기반으로 모든 제도가 재정비 됐으면 좋겠다는 거."

- <성평등복지 의제발굴 릴레이 수다회 7 - '민을 구석은 가족 뿐? 성평등복지로 민을 구석 만들기'> 中

-동시에 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결합도가 높은 일대일의 성애적인 관계, 가부장적 트랙 안의 관계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함.

"저는 애인 집에 우환이 있거나 하면 사실 감정적인 케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선까지는 내가 마음을 내는 거고, 어느 선부터 의무로 느껴지고, 어느 선부터는 과한지, 그런 선을 내가 결정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정해가는 게 필요한데, 결혼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해진 기대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 관계 안에서의 보살핌의 문제는, 그 보살핌이라는 감정을 주고받기엔,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서,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 <성평등복지 의제발굴 릴레이 수다회 7 - '민을 구석은 가족 뿐? 성평등복지로 민을 구석 만들기'> 中

-그래서 이들은 혼자 살거나, 비혼여성공동체를 꿈꾸거나, (이성애)동거커플로 지내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음.

-이들은 적극적으로 대안적 가족구성권 입법을 상상한 적은 없지만, 그런 논의를 소개했을 때 자신들의 삶의 선택지가 확장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환영함.

② 정상가족 안의 기혼여성들

-정상가족 안에 있는 기혼여성들 역시 대안적 가족구성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

-특히 복지제도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사회안전망이 가족의존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안전망이 가족 안에서의 여성, 즉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리고 이것이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각자의 성역할에 갇혀 삶의 질이 낮아

지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부양하는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계의 피로감에 싸여서 살잖아요. 의무감, 기대, 돈을 얼마를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 <성평등복지 의제발굴 릴레이 수다회 7 - '민을 구석은 가족 뿐? 성평등복지로 민을 구석 만들기'> 中

-또한 이들은 정상가족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의 성역할 수행에 대해 협상하는 주체로서 겪게 되는 애환, 결혼과 가족이라는 명목 하에 일대일의 성애적 관계로 협소화되는 친밀성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가족구성권에 대한 대안적 입법이 가부장적 가족의 정상성을 흐드는 사회적인 배경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함

"그리고 결혼해서 가족을 꾸려야 안정된다는 그게,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기도 하고, 결혼해서 오래 살지만 누가 먼저 죽기도 하고, 삶의 형태는 되게 다양한데 사람들은 항상 부부가 서로를 부양하고 돌보는 그런 관계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결혼이란은 다른 거니까 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계의 방식들을 좀 변화시키지 않을까? 일단 시월드가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요즘은 '나 누구랑 살기로 했어'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꺼야? 또 어떤 사람들은 동거할꺼야? 이렇게 묻는데, 다음 세대에는 너 거기 등록할꺼야? 이럴수도 있겠네요."

- <성평등복지 의제발굴 릴레이 수다회 7 - '민을 구석은 가족 뿐? 성평등복지로 민을 구석 만들기'> 中

③ 성소수자 그룹

-민우회 퀴어 소모임 일이삼반²⁷ 내에서도 노후나 친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화제에 오름. 이때 결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30대 비혼여성과 비슷한 맥락에서 더 느슨하고 친밀성이 분산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를 나누는 경우가 많음. (우리 늙어서도 서로 가까이 살자는 등) 이런 분위기에는 성애적 결합에 기초한 일대일의 친밀성이 가진

²⁷ 성소수자만의 소모임은 아니며 일반과 이반과 삼반(?)이 섞여 있는. 다양한 성적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퀴어에 관한 활동을 하고 일상을 나누는 소모임

한계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음.

- 즉 민우회 내 성소수자 그룹 안에서조차 기존 제도 밖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 가족구성권의 재 구성에 대한 욕구가 있음.

○ 외부 요청에서 확인한 담론의 현주소

- '1인가구'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가족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담론화 되고 있는지를 민우회가 외부에서 받아온 요청들 속에서 체감한 부분도 있음.

- 가족 구성의 변화는 주로 '1인가구'의 등장이라는 키워드로 다루어지고 있음.

- 이 '1인가구'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이슈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기대하면서 민우회에 어떤 대안이나 입장을 요청하는 흐름들이 있었음.

-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요청이 있었음. 이 정책은 작년 3.8에 맞춰 발표되었음.

- 이 정책은 '여성 1인가구'라고 표현된 비혼과 미혼이 뒤섞여 있는, 어쨌든 현재 가족 개념이 재편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정책 대상으로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 하지만 이 현상을 기존 가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정상성의 범위 밖에 있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소수자로 '여성 1인가구'를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함. (전용 공공임대주택, 안심 귀가 서비스, 캡스 설치)

- '1인가구'에 대한 언론사들의 입장 요청들 또한 왕왕 있음

- 이런 요청들은 '1인가구'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과 대안을 찾으려는 흐름으로 읽힘.

- 하지만 서울시 정책의 예에서 보듯이 이 흐름은 '1인가구'라는 이슈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족의 지각변화의 단면으로 담론화하기 보다는 정상가족 개념은 그대로 둔 채, 예외적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1인가구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

- 따라서 1인가구 현상으로 대표되는 가족의 지각변동을 친밀성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욕구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담론화 과정을 운동 단위에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3. 고민지점들

- 마지막으로 몇 가지 고민지점들을 공유

- 운동의 큰 방향성에 대해 발제문에 동감하나, 사실 구체적인 입법 운동의 과정을 생각하면

아직 더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음.

-그 부분은 누가 이 법의 당사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함. 복지제도가 개인 단위로 재편된다면(정말 그렇게 된다면!) 가족이라는 개념을 두고 법적인 구속력이 발휘될 부분은 재산관계, 상속, 친자관계 등이 남지 않을까 싶음.

-그런데 예를 들어 새로운 법안의 등록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비혼여성 그룹은 기존의 경혼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서 출발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을 원치 않는 느슨한 관계를 구상하는 경우가 많음.**

-대안적 가족구성권 입법에 호응하는 비혼여성이나 기혼여성은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상징적 측면에서 이 법안을 환영하는 것일 수 있음. 그렇다면 입법 운동의 당사자가 되기에는 동력이 느슨하지 않을까.

-또 다른 그룹인 성소수자 그룹은 이 대안적 가족구성권 법이 동성결혼에 비해 좀 더 느슨한 형태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소수자 정치에 기반한 인정투쟁과 다른 결로 이 법안이 다가갈 수 있음.

-그렇다면 이 운동의 당사자는 누구일까? 선언적인 입법, 기본법적인 헌법적인 성격의 입법이 가능할까? 당사자가 명확하고 차별 사건이 산적해 있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됨.

-그러므로 이 입법의 필요에 대한 구체성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지금 운동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 앞서 이야기한 주체들이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법안을 환영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과 이 법안의 의미에 대한 담론을 채워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의 토론회처럼 운동의 큰 방향성을 조율하고 합의해나가는 자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끝>

토론 2

조숙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가족에 대한 법 규정

- 이념적 의미 : 민법 => 법률효과적인 의미는 없음
- 사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규율
민법 친족편 부양, 상속, 이혼 재산분할 등
- 사회복지제도의 수혜단위
- 조세제도 운영 원리

2. 비전형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판결 분석

- 혈연의 강조

친자관계에서는 혈연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혈연은 우리 가족법에서 친자관계의 규율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요인으로 보인다. 혈연 외에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제도로 입양이 있으나 실제 이용사례는 극히 미미하고 일반입양의 경우 취소와 파양을 통해 부모자 관계가 해소될 수 있어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민법 개정으로 친양자 입양제도가 생겨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 역시 취소와 파양이 가능해 혈연에 의한 친자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즉, 혈연이 아닌 친자관계가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와 완전히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에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혈연의 강조를 인공생식기술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가 결국 인공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에 대한 법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가족'에 있어서 혈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인간의 종족보존 본능이 제도화된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통해 사회화된 개념인 것인가? 결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고대시대부터 결혼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서로 정략적인 관계를 맺어 온 것을 보면²⁸, 혈연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밀접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혈연에 대한 애착은 인간 본능의 속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자신의 혈연인 자녀를 동맹에게 보내는 것이 강력한 연대의미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혈연을 통한 연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혈연만을 친자관계 인정의 기준으로 보는 것 혹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 혈연간의 관계를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나, 철저한 부계혈연관계를 중시한 우리나라의 가계계승 전통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비혈연관계에서도 가장권의 계승이 이루어져왔으며 실제적인 혈연관계보다는 관념상의 계보관계를 중요시해왔다는 것을 비교해보면²⁹,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혈연의 중시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편적으로 혈연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전은 우리에게 혈연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한 임신, 출산은 유전적인 부모와 관계없이 부모자 관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 사실혼 관계에 대한 판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느냐 혹은 있었느냐 여부를 소송이라는 절차 속에서 파악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라는 것은 ‘양성 간에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유효하게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³⁰ 법원의 판결들에서는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결혼식을 했는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등 공개적인 관계를 맺어왔는지 등을 따져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인지 혹은 그냥 동거생활만을 한 것인지 구분하고 있다. 또한 중혼적 관계나 동성결혼과 같이 ‘사회관념 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관계에 대하여는 어떠한 가족법적인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협조, 부양하며 공동생활을 해왔다는 것은 ‘가족질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시되어진다.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호의 필요

²⁸ 스테파니 쿤츠, 진화하는 결혼, 작가정신, 2009

²⁹ 김미영, ‘한국의 집과 일본의 이에(家)’, 민속연구 제6집, 1996

³⁰ 위 김주수·김상용 247쪽 각주 296) 참조

현재까지 우리 법과 판례가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는 혼인과 준혼인적 성격을 가진 사실혼 관계뿐이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관계 내지 공동생활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는 사실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의 모습 중에 사실혼에 해당되는 관계 외에 법률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인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판례를 통하여 혹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규율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정형화를 요구하는 법의 속성상** 그 다양한 관계 중 어느 지점에든 기준을 잡아 법적인 보호를 받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 기준점은 시대마다 달랐고 변해왔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기준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있다. 과연 다양한 관계, **그 중 어떤 경우만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3. 가족에 대한 보호의 확장 또는 기준의 확장

=> 가족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폐지되는 결과가 됨

4. 고정된 단위가 아닌 여러 가지 속성을 수행, 조합, 배치하는 개개인의 실천의 결과로 가족 규정

: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불가능해짐 => 가족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협약의 등록을 통한 해결?: 등록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보호의 필요 예) 사실혼

5. 법 제도에로의 편입을 위한 조건 - 보편적 기준- **공시-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 예시)**
중혼

토론 3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토론 4

이나라 동성애자인권연대

발제문 평가 - 동성결합을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지어 의미화 해 유익했고, 정상성과 이성애 규범성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나는 동인련 활동가 타이틀을 걸고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 내 주장이 동인련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동인련도 회원들은 이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오늘날 가족 제도의 특징과 구실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제도가 성소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실, 가족 현실의 변화와 성소수자 삶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 더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성결합/결혼이 한국 사회의 의제로 떠오르는 것의 의미 - 발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중적 언어로 '결혼'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동성결합이 논의되고 의제로 떠오른것, 그리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결혼/가족(이데올로기) 너머를 지향, 상상하는 것과 '결혼 평등' 쟁점이 반드시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동화주의를 경계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의에 저항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면 결혼 평등 요구를 지지하면서도 그것을 목표 달성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평등 요구의 달성은 여론의 획득에 달려있으며, 이는 곧 동성애자/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지지 확대를 뜻한다. 가족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정상성에 도전하는 과정, 담론의 형성은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제도화의 현실성과 별개로 혐오세력이 동성결혼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우리 운동은 이에 맞서 대응하고, 여론을 획득해야 한다.

이성애 결혼에 기초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가족의 변화 - 발제문에서 훌륭하게 개괄한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 변동은 최근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세계적,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가족은 끊임 없이 변해왔고 가족의 현실은 언제나 이데올로기와 차이가 있었다. 이주,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지위 변화, 출산 통제, 경제 위기, 산업 구조 변화, 세계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어떤 사회에서도 가족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장 강

력한 사회 통제 장치 중 하나이고, 불안정과 위기 속에서 강력한 위안이자 희망이기도 하다.

재생산과 돌봄을 개별 가족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선택한 체제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의 필요성과 소중함이 강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계급에 걸쳐, 모든 지위의 사람들에게 가족에 대한 환상이 끊임 없이 파탄나면서도 강력히 작용한 시대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가족의 환상을 가장 크게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그 환상이 가장 비참하게 깨지는 사례는 노동계급과 하층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가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약화시킨다. 가족은 언제나 모순 덩어리였다.

동성애/동성결합의 의미 - 동성애자들은 오늘날 가족의 물질적 토대(개별화된 재생산)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성역할 고정관념)에 모두 도전한다. 이것이 체계적인 동성애/성소수자 억압의 뿌리다. 한편 소수자들이 모든 역사/지역에 걸쳐 존재하면서도 스스로를 규정하고 삶을 사는 방식은 특정 시대와 지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사회적 인정과 권리가 확대되면서 성소수자들이 가족 내에서 맺는 관계와 가족'하기'의 양상에는 변화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족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지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밀어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나아가 스스로의 방식대로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겠다고 얘기하기도 하는 상황에 있다.

오늘날의 상황은 현대 가족제도가 다양한 섹슈얼리티와 타협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통적 가족 기능을 '동성애자'도 수행 가능하다는 것을 부각하면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화되고 '인정'을 쟁취하는 과정이 '순응'의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리 존재 자체가 정상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결혼 평등 요구를 단순한 동화주의로 여기는 입장을 국내외 모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결혼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정말로 그 너머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가족이다. 가족 구성에 있어서 혼인(그리고 출산)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평등의 요구가 배타적인 (이성)결혼을 향한 것은 자연스럽다.

평등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합이라는 오래된 급진적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소수자의 평등과 인권,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해방을 지향하고, 성소수자들 스스로와 지지자들의 실천과 연대를 원칙으로 삼는 동인련에 내가 제안하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다.

사회가 가족을 강권하고 가족이 사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현실에서는 결혼을 비판하고 가족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가능케 할 조건을 현실에서 구현해야 한다. 현실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특정 쟁점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오늘날에도 볼 수 있듯이 경제 위기, 불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가족 너머를 상상하는 것조차 방해한다. 가족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그 대응이 기존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답습하거나, 방어하는 데 머무르지 않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운동 속에서 가족 제도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경험들에 대해 소통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공통의 목표로서 가족 제도

에 맞설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동인련이 그간 추구해온 운동 전략과 맞닿아 있다. 성소수자 해방을 가능케 할 사회 변화의 전망을 [사회운동 속에서] 확대하기.

동성결혼 요구가 공격받고, 평등권을 부정받는다면 그 요구를 방어하면서 지지를 결집하고 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소수자 억압과 차별의 다양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커밍아웃 할 수 없는 적대적 현실, 모든 것이 이성애 가족에 기초한 제도의 문제점 등등. 그렇게 구체적 현실의 변화의 결과로서 관계의 공적 인정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결혼제도를 상대화하는 전략도 대중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적인 세력은 결혼 평등을 내어줄 수밖에 없더라도, 가족 가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평등과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현실에서 매우 복잡하게 때로는/실제로는 거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다. 성소수자, 나아가 섹슈얼리티와 인간 관계의 해방이라는 급진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변화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현실에 바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토론 5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